



# 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**선금지급 승인 [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공사(건축공사)-1차]**

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최근호)』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과장 회의자료(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, 2016.3.8. 행정자치부)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처리하고자 합니다.

- 가. 공 사 명 :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공사(건축공사)-1차
- 나. 계 약 금 액 : 금1,003,980,600원(금일십억삼백구십팔만육백원)
- 다. 계약상대자 : (주)대창건설
- 라. 선금신청액 : 금297,000,000원(금이억구천칠백만원)
- 마. 선금승인액 : 금297,000,000원(금이억구천칠백만원)  
- 계약금액의 29.6% (선금의무지급률 50% 이하로 적정)
- 사. 준공 기한 : 2016.12.10.

※ 선금 지급시 유의사항

가. 선금의 사용

- 수령한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
(또한,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)
-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

나. 사용내역서 제출

- 지급한 선금의 전액 사용후 사용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.  
(단,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로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)

#### 다. 반환청구

-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함
  -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
  -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
  -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

#### 라. 채권확보

-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서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은행의 선금금 지급보증서(선금지급일 이전~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)
  - 각 공제조합에 의하여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

#### 마. 선금지급시 청구서류 : 문서 또는 나라장터 이용 청구

-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
- 세금계산서
- 선금지급보증서. 끝.

---

주무관

**권소영**

계약팀장

**박우동**

재무과장

**박성주**

경제재정국장

03/16  
**오남희**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5323 ( ) 접수 ( )

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

/ <http://www.sdm.go.kr>

전화 02-330-1135

/전송

/

/ 대시민공개